

조 례 안 예 고

통영시의회 공고 제 2024-34호

통영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통 영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통영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도시브랜드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도시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통영시 상징물 조례」를 폐지·통합하여 체계적인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 활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 시의 대내·외적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선진화된 도시이미지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도시브랜드와 상징물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통영시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5조)
- 마. 상징물 관련사업 시행, 사용 승인 등 상징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
- 바.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4. 의견제출

-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21일까지
- 나.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등
- 다. 의견제출 사항

-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서 제출처: 통영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1) 주 소: 우)53040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통영시의회)

(2) 전화번호: 055-650-2952(Fax. 055-650-2999)

통영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브랜드”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징물 및 경제, 문화, 환경, 시민, 기반시설, 여가생활 등 도시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2. “상징물”이란 시를 상징하는 다음 각 목의 종류를 말한다.
 - 가. 시기(市旗): 별표 1
 - 나. 휘장(徽章): 별표 2
 - 다. 시화(市花): 별표 3
 - 라. 시목(市木): 별표 4
 - 마. 시조(市鳥): 별표 5
 - 바. 캐릭터: 별표 6
 - 사. 브랜드슬로건: 별표 7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

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한 통영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4.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3.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계획

제6조(통영시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통영시 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브랜드과제의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시브랜드 관련 시민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상징물의 결정 및 추가·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 홍보, 교류협력, 체육, 관광, 문화예술, 도로관리, 도시계획, 건축, 공공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부서의 장
2.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도시브랜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브랜드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상징물의 관리) 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호가목의 시기는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별표 1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다.

③ 제2조제2호나목 및 바목, 사목의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시기(市旗), 휘장(徽章): 행정과

2. 캐릭터, 브랜드슬로건: 기획예산실

제17조(상징물 관련사업)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의 활용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8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① 제2조제2호나목 및 바목, 사목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사용료 등) ① 사용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에 따라 산정한다.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재정지원) 시장은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정보제공 및 시민의견수렴)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 상징물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상징물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제18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제18조 관련)

별표 1 시기(제2조 관련)

별표 2 휘장(제2조 관련)

별표 3 시화(제2조 관련)

별표 4 시목(제2조 관련)

별표 5 시조(제2조 관련)

별표 6 캐릭터(제2조 관련)

별표 7 브랜드슬로건(제2조 관련)

■ 통영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관리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용 상징물		
사용 기간		
사용 목적		
사용 내용 (구체적으로)		

「통영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용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관리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상 호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전 자 우 편 주 소
사용 상징물		
사용 기간		
변경 사유		
변경 내용 (구체적으로)		

「통영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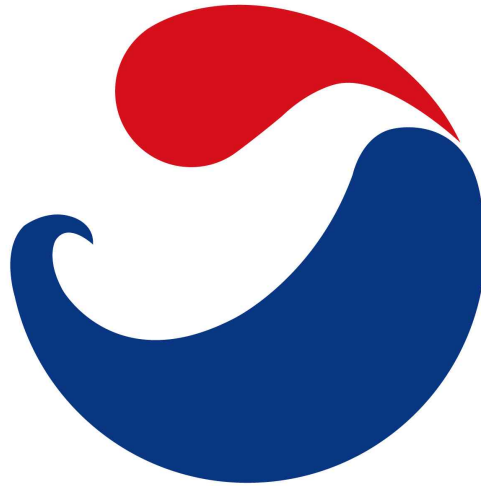
통영시장 귀하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표 1>

■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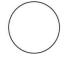


통 영 시

1.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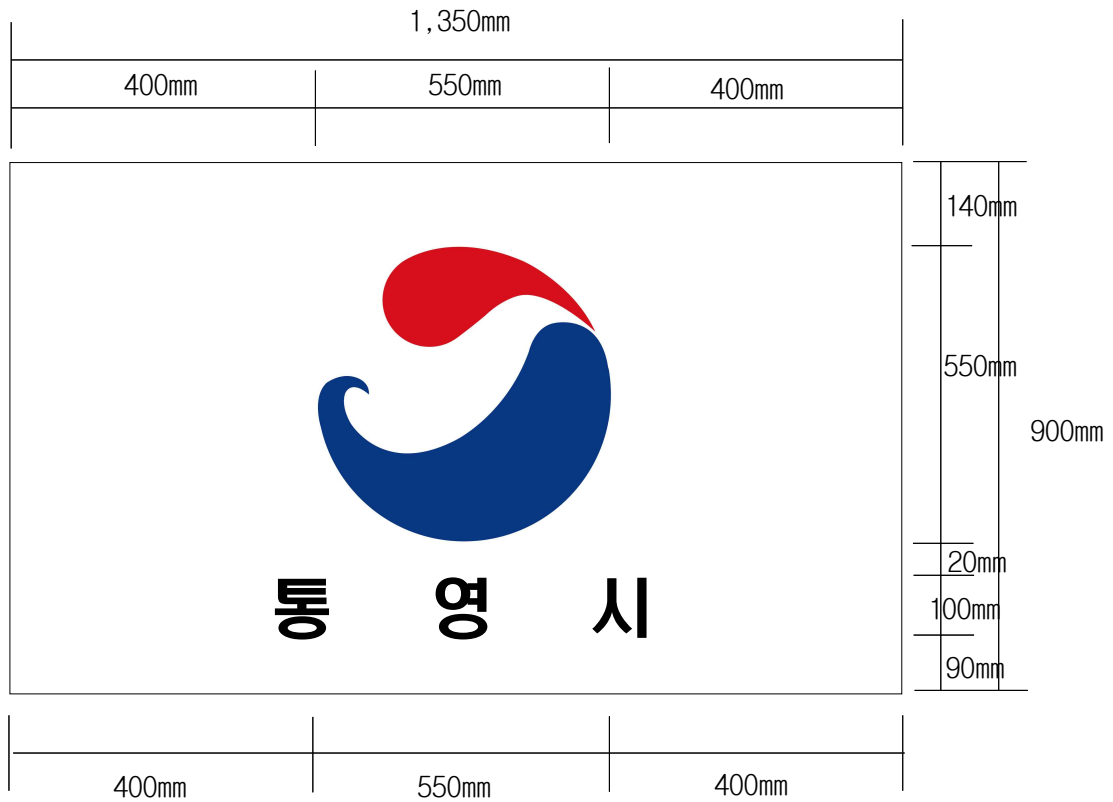
- 흰 바탕색은 자유, 평화, 협동, 단결 그리고 주민의 순결한 성품을 뜻함.
- 위의 붉은 색은 떠오르는 태양, 붉은 동백꽃을 상징함.
- 푸른색은 깨끗한 바다를 상징함.
- 문화, 예술의 고장을 뜻함.
- 우리고장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미래 지향적인 도시임을 상징함.

2. 모양 및 의미

	힘차게 비상하는 갈매기 모양 슬기롭게 화합할 줄 아는 통영시민상을 상징함.
	태극문양의 형태로 이충무공의 애국충정을 의미함. 역사적 고장으로 문화·예술의 고장을 상징함.
	청정해역의 출렁이는 맑은 바닷물을 상징함. 수산도시의 발전적인 느낌을 표현함.
	부지런하고 원만한 성격의 시민상을 상징함.

3. 시기 규격

- 통영시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하되,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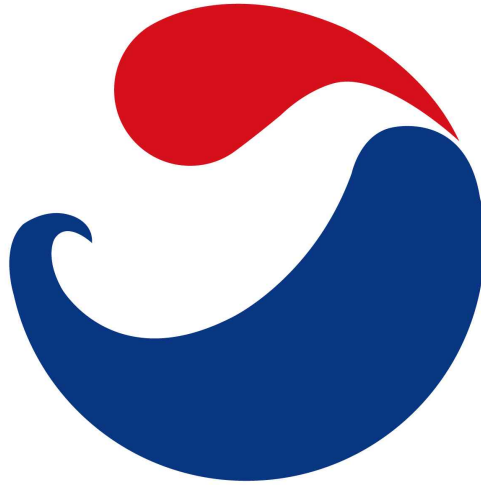


4. 시기 색상

- 통영레드(KSI 0045)
 - Black 검 정 10%
 - Magenta 심홍색 100%
 - Yellow 노 랑 5%
- 통영블루(KSI 0857)
 - Black 검 정 60%
 - Cobalt 코발트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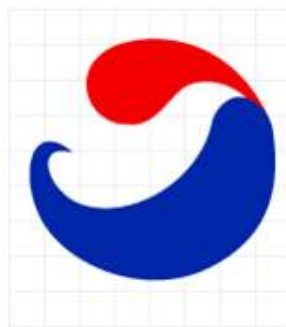
<별표 2>

▣ 휘장



● 휘장은 통영시의 위상과 권위를 상징하며, 공식적 행사나 시를 대표하는 시각적 상징물에 활용할 수 있다.

● 작도법



<별표 3>

시화: 동백꽃



- 추운 겨울철에도 붉은 꽃을 피우며, 통영인의 기상과 저력, 그리고 이충무공의 호국정신을 상징.

<별표 4>

■ 시목: 동백나무



- 남해안 도서지방에 자생하는 사철 잎이 푸르고 겨울에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나무로 통영의 정열과 정서를 나타냄.

<별표 5>

■ 시조: 갈매기



- 우리고장을 비롯 해안지방에 서식하는 새로서 물고기의 움직임을 알려주며 오래전부터 고장의 길조임.

<별표 6>

■ 캐릭터

● 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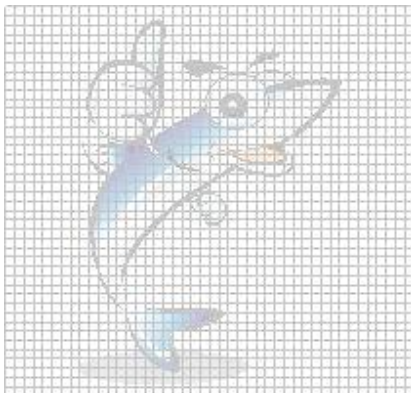


☞ 메인캐릭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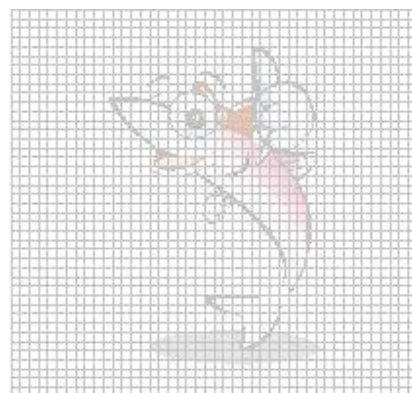


☞ 서브캐릭터

● 작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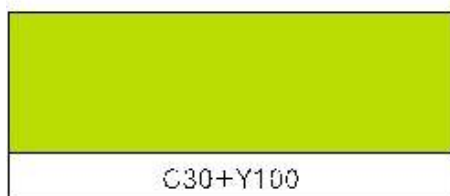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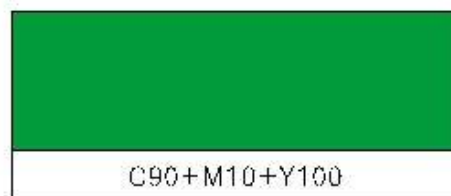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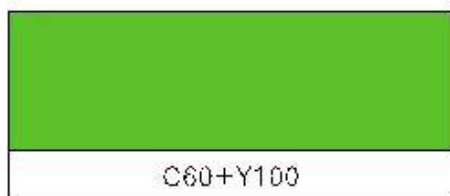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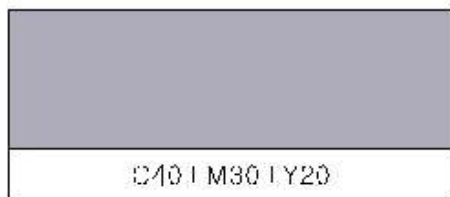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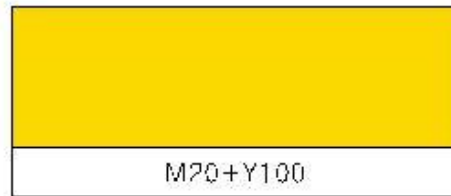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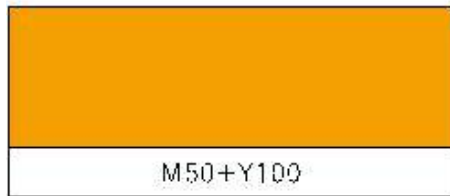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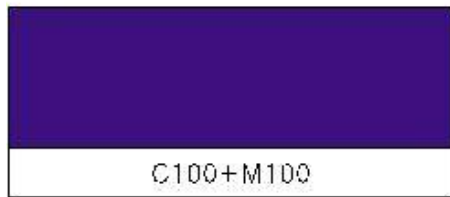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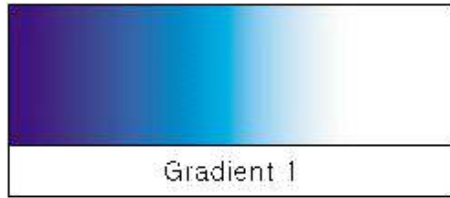
☞ 메인캐릭터



☞ 서브캐릭터

- 통영시 캐릭터의 명칭은 통멸이(Tongmyeol-i)이다. 통멸이란 통영의 첫글자 “통”과 멸치의 “멸”에서 따온 말로, 깨끗한 도시와 남해안 수산업 1번지라는 대외 이미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
- 통영시 캐릭터는 통영시 CIP에 있어 중요한 시각아이덴티티 요소로 시 마케팅, 축제 및 프로모션 활동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서브캐릭터는 메인캐릭터의 철학적, 디자인적 특성을 보충하고 이미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활용된다.
- 전용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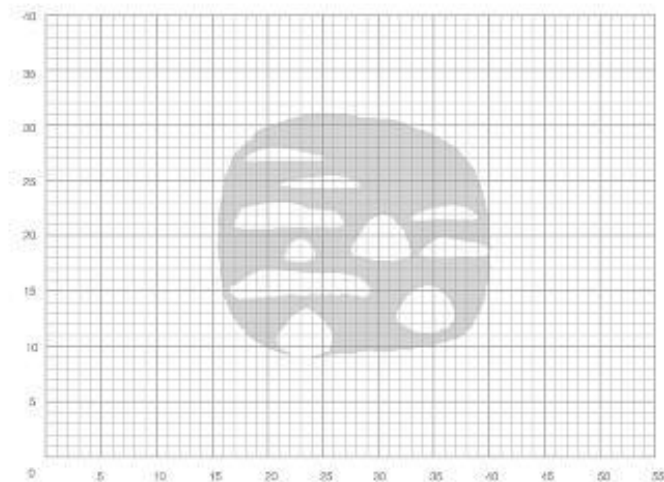
<별표 7>

■ 브랜드슬로건

● 기본형(심볼)



● 작도법



● 도시슬로건

바다의땅-통영

THE LAND OF SEA-TONGYEONG

- 통영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이미지로 “바다의 땅”이라는 슬로건을 디자인 컨셉으로 하고 통영의 다채로운 문화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통영의 푸른 바다와 250여개의 아름다운 섬들을 그래픽 모티브로 통영의 이미지를 형성화하였다.
- 블루(Blue) 컬러는 맑고 깨끗한 통영의 바다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화하여 세계적인 명소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통영의 국제성을 강화하여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거듭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전용색상

Main Color



Sub Color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지식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8(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재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에 지식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법 제43조의7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지식재산: 별표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1. 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 및 이 영 제52조의4제1항제1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과 같다.
 - 가. 총판매예정수량: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 나. 제품의 판매단가: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 다.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지식재산이 이용되는 비율
 - 라.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등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등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지식재산: 별표 5

3. 법 제4조제1항제5호다목의 지식재산: 별표 6

4. 법 제4조제1항제5호라목의 지식재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 해당 지식재산과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3조의6제4항 후단에 따라 일반입찰로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등은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31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의5(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8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의8제2호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의 경우: 사용료등의 100분의 50

□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 제233조 또는 제2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하고,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0조를 위반한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33조 또는 제234조를 위반한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